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평가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e Candidate's Public Offer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이 회 훈*
Lee, Hie-Houn

목 차

- I. 서 론
- II.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의 의의 및 발전과정
- III.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와 그 해결방안
- IV.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에 의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의 해결방안
- V. 결 론

국문초록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부터 제6호에서는 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의무내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내역(이 부분은 산거후보자와 선거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후보자와 그의 직계존비속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스스로 포기 내지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부터 제6호는 합헌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들은 선거후보자의 공직에의 적합성과 공직의 남용가능성 및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등을 국민들에게 알게 하여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3

논문접수일 : 2010.6.30
심사완료일 : 2010.7.22
제재확정일 : 2010.7.23
* 법학박사·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호부터 제5호는 합헌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들은 해당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선거후보자와 그의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공직선거법,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기본권의 충돌, 공직 인물의 이론

I. 서 론

얼마 전인 2010년 6월 2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선거가 행하여졌는바, 이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의해 후보자 자신의 공직 자율리법 제10조의2 제1항¹⁾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제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²⁾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제3호), 최근 5년간의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³⁾의 소득세⁴⁾·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⁵⁾에 관한 신고서(제4호),⁶⁾ 금고 이상의 형⁷⁾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전과기록”으로 줄임)에 관한 증명서류, 금고 이상의 형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제5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학력(이하에서 “정규학력”으로 줄임)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제6호)⁸⁾를 관할 선거구선거관

- 1) 공직자율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다만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참조.
- 4)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참조.
- 5) 다만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참조.
- 6) 다만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참조.
- 7)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참조.

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9조 제10항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자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자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9조 제1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 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제49조 제10항 및 동법 제49조 제11항에 의해 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전과기록사항, 정규학력사항과 최근 5년간의 선거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사항(이하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으로 줄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되려는 선거후보자의 재산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혹 부정축재한 재산이 없는가를 알 수 있게 하고, 최근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납부실적을 공개함으로써 당해 선거후보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및 선거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선거후보자의 금고 이상의 형의 전과기록과 학력 등에 대해 투표 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투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제49조 제10항 및 동법 제49조 제11항에서 선거후보자 본인이나 선거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하에서 “선거후보자 측”으로 줄임)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재산 및 소득관련 사항, 병역관련 사항,

8) 이때 한글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동법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동법 제64조의 선거벽보, 동법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동법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6호 참조.

전과기록 사항과 학력 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선거후보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후보자 측의 감추고 싶은 중요한 사적인 비밀사항 즉, 선거후보자 측의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제49조 제10항 및 동법 제49조 제11항에 의해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각각 그 의의와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본다(이하 Ⅱ). 다음으로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 그 의의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고찰한다(이하 Ⅲ).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제49조 제10항 및 동법 제49조 제11항에 의해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이하 Ⅳ).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것들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한다.

II.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및 발전과정

프라이버시권은 처음 미국에서 등장하였는바, 미국에서 1880년에 토마스 쿠리(Thomas Cooley) 판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저서에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⁹⁾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아직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후 1890년에 워렌(Warren)과 브랜다이스(Brandeis)가 프라이버시권을 보다 상세히 분석한 논문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진보된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이러한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의 주장은 미국에서 1890년대 당시에 황색신문¹¹⁾들의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 형식이었는데, 그

9) Thomas C. Cooley, *Laws of Torts*, 1st ed., 1880, Sec. 29. 이 자료 출처는 정재황,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소, 2002, 119면 참조.

10)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890, pp.193~195. 이 자료 출처는 서주실, "Warren ·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 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소, 1995, 56면 이하 참조.

11) 여기서 '황색신문'이란 상업주의적 신문의 한 가지로 판매만을 주목적으로 범죄사건·스캔들·가십·성문제 등과 연예 오락관계 기사를 중점적이고 선정적이며 홍미본위로 보도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사생활비밀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결과였다. 미국에서 18세기까지의 삶이란 공동체적 삶이었고 따라서 공개적 삶이었기 때문에 사생활비밀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은 형성되지 못하였다.¹²⁾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황색신문들이 유명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¹³⁾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인정되어¹⁴⁾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후 1902년에 미국의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사건¹⁵⁾에서 문제시되었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인 로체스터 제분회사(Rochester Folding Box Company)가 원고인 애비 로버슨(Abby Roberson)의 사전에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보상 없이 그녀의 사진을 도시에 전단지 광고로 사용되었다. 이에 그녀의 가족은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관심은 그녀에게 심한 당혹감과 굴욕감을 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에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을 판례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뉴욕주 의회는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여 인정하는 입법을 서둘러서 1903년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최초의 법률¹⁶⁾을 제정하였다.

먼저 과대한 특대 제목(scare-heads)과 사진을 즐겨 사용하며, 또한 사회의 낙오자·희생자·패배자들(underdog)에 대한 과시적 동정과 대중의 여론에 편승하는 성향의 신문을 뜻하는바, 이러한 신문을 영어로 '옐로 페이퍼(yellow paper)' 또는 '옐로 프레스(yellow press)'라고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황색신문' 또는 '황색지'라고 한다. 이에 대한 것은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Dic&y_number=6054 참조.

- 12) M. Ethan Katsh, "The Electronic Me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Law",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9, p.190. 이 자료 출처는 정재황, 전계논문, 119면 참조.
- 13) 미국의 판례법상 불법행위(Tort)로 인정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은 통상 프로저(Prosser) 교수의 분류에 따라 ① 내밀적 사실의 공개(disclosure of private facts) ② 안온침범(intrude upon seclusion) ③ 오인적 기술(portrayal in a false light) ④ 상업적 전용(appropriation for commercial purposes)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것은 강경근, "프라이버시권의 의의와 구성요소", 「고시연구」, 통권 제306호, 고시연구사, 1999, 25면 이하; 정재황, 상계논문, 119면 참조.
- 14) 정재황, 상계논문, 119면 참조.
- 15)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171 N.Y.538, 64 N.E.442(1902). 윤명선,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역사적 고찰-미국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20권 제1호, 경희대 법학연구소, 1985, 115면.
- 16) N.Y. Sess. Laws 1903, ch. 132 §§1-2. 이법은 1921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N.Y.Civils Rights Law의 §§50-51로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N.Y. Civils Rights Law의 §50에서는 "광고나 영업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성명, 초상 또는 사진을 본

그리고 미국에서 판례로 프라이버시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1905년에 조지아주 항소법원에서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Co.사건¹⁷⁾으로, 이 사건은 원고 파울로 파베쉬(Paolo Pavesich)의 허락 없이 뉴 잉글랜드(New England) 생명보험회사가 그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여 발생하였는바, 뉴 잉글랜드 생명보험 회사의 신문광고에서 건강해 보이고 잘 차려입은 파베쉬의 사진과 병들어 보이고 남루한 차림의 사람 사진을 같이 제시하면서 파베쉬의 사진 아래에 “지금 보험에 들어라. 보험에 든 사람 (Do it now. The man who did)”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병들어 보이는 사람의 사진 아래에는 “보험에 들 수 있을 때 들어라.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Do it while you can. The man who didn't)”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리고 광고 문안에서 파베쉬가 보험에 들어 현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사실은 파베쉬는 뉴 잉글랜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뉴 잉글랜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이 광고를 보기 전까지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파베쉬는 당연히 자신의 사진을 이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다.¹⁸⁾ 이에 원고 파베쉬는 피고인 뉴 잉글랜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에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은 자연의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자연법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법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은 승인되어 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판결은 이후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형성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 법원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주 인용되었다.¹⁹⁾

이후 196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초로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²⁰⁾에서 프라

인의 서면의 의한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경범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N.Y. Civil Rights Law의 §51에서는 “전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자기의 성명, 초상 또는 사진을 광고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당한 자는 그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형평법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자료 출처는 황인호,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1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241면, 각주 47번 참조.

17)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mpany, 122 Ga. 190, 50 S.E. 68 (1905).

18) <http://data.adic.co.kr/lit/fulltext/S0003015/01.doc> 참조.

19) 황인호, 전제논문, 242면 참조.

20)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참조. 이 사건은 원고인 메리 그리스볼드 (Mary Griswold)가 미국 코네티컷 주의 가족계획연맹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뉴헤이븐 가족계획정보센터를 개설하여 기혼부부를 상대로 피임방법에 대한 강연을 하고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였는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장 적절한 피임기구를 추천하여 주었다. 이에 뉴헤이븐 경찰당국은 그리스볼드를 코네티컷주의 피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위 센터의 폐쇄를 명하였다. 이에 코네티컷주 법원은 10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이버시권을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서,²¹⁾ 산아제한에 대한 정보의 배포를 금지한 코네티컷 주법은 부부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²²⁾

또한 미국의 웨스턴(A. Westin)은 프라이버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신체, 태도와 행위를 타인에게 얼마만큼 노출시킬 수 있는가를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였고, 블루스타인(E. Bloustein)은 프라이버시란 인격권의 일종으로 개인의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과 존엄 및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³⁾

한편 미국에서 1960년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²⁴⁾의 결정이나 통제를 하기 위한 권리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발전되어 현대사회에 있어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부각되어 이른바 정보 프라이버시권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생성되었다.²⁵⁾²⁶⁾

즉,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 받지 아니할 권리나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공적으로 엄격한 조사를 받지 아니할 권리의 개념에서 근래에 프라이버시권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로 발전하였다

코네티컷주의 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인 그리스볼드는 코네티컷주의 피임금지법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한 것은 황인호, *상계논문*, 245면 이하 참조.

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588면 참조.

22) 황인호, *전계논문*, 246면 참조.

23)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321면 참조.

24)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는바,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는바, 먼저 '개인적' 이란 어떤 정보가 주체에게 특별히 민감하고, 개인적이며,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정보가 평범하거나 사소한 것이라도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0. 72면 이하; 성선제, *전계논문*, 322면 참조.

25) 권영호·김상명,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0. 315면; 박길자,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초등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초등교육학회, 2009. 93면 참조.

26) 이밖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 헌법과 미국 연방법의 보호에 대한 것은 조규범,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 법학*, 제1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85면 이하 참조.

고 한다.²⁷⁾ 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오늘날에는 이렇듯 소극적인 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권리로 보거나²⁸⁾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²⁹⁾ 또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보호 관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격적 제이익의 총체 내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견해³⁰⁾가 있다.

이에 대해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과거와 같이 사생활의 침해나 공개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소극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성격³¹⁾으로 미국의 밀러(A. R. Miller) 교수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기본적 속성이란 정보주체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하였고,³²⁾ 미국의 프리이드(C. Fried) 교수는 프라이버시권이란 우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는 권리라고 하였으며,³³⁾ 미국의 웨스틴(A. F. Westin) 교수는 프라이버시란 개인·단체·기관이 스스로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자기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라고 하였다.³⁴⁾ 그리고 미국의 비니(W. M. Beaney) 교수는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개인·단체·정부)에 의해 자기의 사상, 문서, 성명, 초상,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취득이나 이용당하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시될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물리적이거나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활범위나 자신이 선택한 생활영역을 침해당할 정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였다.³⁵⁾

27) 한상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의 보장", 「고시연구」, 제7권 제12호, 고시연구사, 1980, 35면 이하.

28)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667면 참조.

29) 권영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고시연구」, 통권 제83호, 고시연구사, 1981, 28면 이하 참조.

30) 안용교, "프라이버시권", 「월간고시」, 통권 제76호, 법학사, 1980, 49면 참조.

31) 이렇듯 적극적 성격의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각 국가의 입법 태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바, 각국의 입법에 1981년에 제정된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큰 지침이 되고 있다. 이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권영호·김상명, 전계논문, 318면 이하 참조.

32) A. R. Miller, *The Assault on Priva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1, p.226 참조.

33) C. Fried, *Privacy*, 77 Yale Law Journal 475, 1968, p.482 참조.

34) A.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N.Y Atheneum, 1967, p.7 참조.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프라이버시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행복추구에 대한 불가결의 구성요소로서, 사생활의 보호 관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격적 제이익의 총체 또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³⁶⁾

2. 알 권리의 의의 및 발전과정

헌법상 알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자유를 자유와 권리를 보는 견해.³⁷⁾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³⁸⁾ 알 권리(정보의 자유)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³⁹⁾ 알 권리(정보의 자유)란 공권력의 방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소극적 정보의 자유)와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유(적극적 정보의 자유)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⁴⁰⁾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⁴¹⁾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⁴²⁾ 알 권리란 보고 읽고 들을 권리 즉, 표현된 의사 등 정보를 받을 권리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⁴³⁾ 알 권리란 신문, 방송, TV와 같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35) W. M. Beaney, *The Right to Privacy and American Law*, 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Duke Univ., 1966, p.254 참조.

36) 안용교, “프라이버시 권리의 헌법론적 고찰 - 프라이버시 권리의 공법적 측면”,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23집,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소, 1979, 126면 참조.

37) 김철수, 전계서, 422면 참조.

3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00면 참조.

3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568면 참조.

40)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91, 410면 참조.

41) 권형준, 「헌법」, 법원사, 2005, 353면; 성낙인, 전계서, 559면 참조.

4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641면 참조.

43) 양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476면 참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는 견해⁴⁴⁾ 등이 있다.⁴⁵⁾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헌법상 알 권리란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수집권과 국가에게 적극적인 정보 공개 행위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권 모두를 포함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바,⁴⁶⁾ 헌법 재판소도 이와 같이 "알 권리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판시하였다.^{47)⁴⁸⁾}

한편 알 권리는 1738년 영국의 토리당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워드햄 경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후,⁴⁹⁾ 미국 연방수정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772년에 독립직후 반연방 주의자들이 연방주의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과 국가자원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요구하면서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⁵⁰⁾ 이후 알 권리라가 헌법상의 권리로 수용된 것은 1787년 미국에서 비공개로 열린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 의에서 재임스 월슨이 주장하면서부터였고,⁵¹⁾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5조⁵²⁾에서 알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선언하였다.⁵³⁾ 이후 미국에서 언론에 의해 알 권리가 처음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 44) 홍성방, 「헌법학 (중)」, 박영사, 2010, 161면 참조.
- 45) 이희훈,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8, 253면 참조.
- 46)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0, 309면; 이성환,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도청 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88호, 한국법학원, 2005, 11면 참조.
- 47) 현재 1991.5.13. 90현마133. 판례집 제3권, 234면, 246면; 현재 2004.12.16. 2002현마 579, 판례집 제16권 제2집, 576면 참조.
- 48) 이희훈, 전계논문, 254면 참조.
- 49) 서정우,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23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122면 참조.
- 50) 이재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관훈저널」, 관훈클럽, 2003, 231면 이하 참조.
- 51) 권형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4면; 김문현,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 정의」, 통권 193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10면 참조.
- 52)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5조에서는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그 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 53)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540면 참조.

1945년 AP통신에 근무하던 켄트 쿠퍼가 뉴욕 타임즈에 “… 시민들은 언론의 완전하고 정확한 뉴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가 배제된 정치적 자유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고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1953년에 크로스의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저서의 출간으로 인해 미국에서 알 권리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기 시작하였다.⁵⁴⁾⁵⁵⁾

이러한 알 권리는 1948년 UN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9조⁵⁶⁾에서 규정되었고, 1966년 UN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제19조 제2호⁵⁷⁾에 알 권리에 대해 규정하여 알 권리를 국제규범으로 승격시켰다.⁵⁸⁾⁵⁹⁾

III.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와 그 해결방안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가. 기본권 충돌의 개념

기본권의 충돌이란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서로 같은 종류의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본권을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여 각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고 상호 대립·충돌하는 기본권의 적용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여 이 때 국가가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기본권을 제한⁶⁰⁾하는 것을 뜻한다.⁶¹⁾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

54) 이재진, 전계논문, 232면 이하 참조.

55) 이희훈, 전계논문, 254면 이하 참조.

56)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접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57) 국제인권규약 제19조 제2호에서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58) 권형준, 전계논문, 4면 참조.

59) 이희훈, 전계논문, 255면 참조.

60)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생활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행하여지는바, 국민상호 간에 있어서 기본권적 이익의 충동가능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권의 상충이라고도 한다.⁶²⁾

나. 기본권 충돌과 구별 개념

먼저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침해받은 자신의 여러 기본권들의 적용이나 효력을 주장하면서 생기는 기본권의 경합과 구별된다.⁶³⁾

다음으로 기본권이 사인들 간에 효력을 가지는 것도 결국 국가가 입법이나 재판작용에 의해 이를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도 기본권의 충돌 문제에서처럼 대립되는 두 기본권 주체와 국가권력의 3각 관계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⁶⁴⁾

그러나 기본권 충돌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구별된다는 견해가 있다. 첫째,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을 주장하는 주체가 상대방의 기본권 행사가 정당하지 못한 불법적인 것이고 자신의 기본권 행사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즉,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사가 문제되는 것에 반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나 사법질서가 그 내용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이전이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으로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되고 그 이행이 법에 의해 담보되었을 계약 내용이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에 적용됨으로써 불법적인 계약으로 평가가 변경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둘째, 기본권의 충돌시 해결방법으로 충돌하는 양 당사자의 기본권 가운데 어느 기본권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

서 발생하는 상반되는 이익을 세분화된 규율을 통하여 조정함으로서 국가의 질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명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헌법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 헌법학회, 2002, 138면 참조.

- 61) 김선택,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제한의 특수문제로서 기본권충돌의 법리", 「판례 연구」, 제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84면; 성낙인, 전계서, 338면; 성정엽, "기본권 충돌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공법학연구」, 제1집, 영남공법학회, 1999, 93면;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고려법학」, 제3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121면; 정재황,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16면 참조.
- 62) 정재황, 상계논문, 16면; 허영, 전계서, 270면.
- 63) 성정엽, 전계논문, 93면 참조.
- 64) 정재황, 전계논문(주 61), 18면 참조.

이 문제되는바,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법익(이익)형량에 의한 방법⁶⁵⁾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⁶⁶⁾ 등이 적용되는 것에 반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인 계약에 적용함으로써 그 계약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셋째, 기본권의 충돌의 경우에는 충돌하는 기본권 중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기본권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여 문제시되는 기본권행사의 취소나 손해배상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에 대해서 기본권을 적용함으로써 문제의 계약이 기본권에 반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게 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⁶⁷⁾

끝으로 기본권의 유사충돌은 일명 기본권의 의견상 충돌이라고도 하는바, 기본권의 유사충돌이란 얼핏 보아서는 마치 어느 일인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기본권의 충돌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일인의 기본권의 행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행위 즉, 기본권의 남용이나 기본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가 타인의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충돌하는 경우로서,⁶⁸⁾ 기본권의 유사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불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기본권이 충돌되는 행위가 구별된다.

2.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

가.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에 의한 해결방안

이 이론은 헌법에서 기본권 충돌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입법자의 자유로운 형성에 맡겨야 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론이다.⁶⁹⁾ 이에 대해 독일의 레르헤(P. Lerche) 교수는 헌법이 법률유보를 통해 많은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지만 명시적인 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해결규범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65)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III-2-나 번 참조.

66)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III-2-다 번 참조.

67) 장영수, 전계논문, 125면 이하 참조.

68) 김선택, 전계논문, 85면; 성낙인, 전계서, 339면; 장영수, 전계논문, 122면; 홍성방,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안암법학」, 제9집, 안암법학회, 1999, 4면 참조.

69) 정재황, 전계논문(주 61), 18면 참조.

입법자가 독자적인 갈등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의 뤼푸너(W. Rüfner)는 기본권이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법형성의 과제이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구체적인 법형성이 기본권 충돌의 해결책인가를 재검토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⁷⁰⁾ 이 레르해와 뤼푸너의 두 견해를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에 있어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이라고 한다.

나. 법익(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안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것이 실현하려는 법익(이익)이나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이 중에서 보다 중요한 내지 보다 우월한 법익(이익)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법익(이익)을 유보시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이론이 법익(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이다.⁷¹⁾ 다만 이 방법처럼 기본권의 충돌시에 법익(이익)형량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다는 가설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기본권의 위계질서⁷²⁾를 바탕으로 몇 가지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³⁾

먼저 상위기본권과 하위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기본권의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물론 마땅하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또는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 질서에 가치적인 핵이 다른 모든 기본권 보다 상위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⁷⁴⁾⁷⁵⁾ 다음으로 동위 기본권 간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과 '자유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익형량이 행해질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신적 자유권이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이다.⁷⁶⁾ 그리고 자유를 실현시

70) 성정엽, 전개논문, 94면 참조. 이 두 명의 견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홍성방, 전개논문, 6면 이하 참조.

71) 윤명선, "기본권 충돌시의 효력문제", 「고시연구」, 통권 제265호, 고시연구사, 1996, 77면 참조.

72) 기본권의 위계질서 원칙은 충돌하는 기본권 중에서 어느 하나가 규범적으로 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보다 약한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보다 강한 기본권을 실현시키려는 이론이다. 이 원칙에 대해 자세한 것은 성정엽, 전개논문, 95면 이하 참조.

73) 허영, 전개서, 271면 이하 참조.

74) 허영, 상계서, 272면 참조.

75) 이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재 1991.07.22. 89헌가106, 판례집 제3권, 419면; 현재 2004.08.26. 2003헌마457, 판례집 제16권 제2집(상), 355면 참조.

76) 윤명선, 전개논문(주 71), 77면; 허영, 전개서, 272면 참조.

키기 위한 기본권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보다 우선시킴으로써 자유 속의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가 자유우선의 원칙이다.⁷⁷⁾

다.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안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익(이익)형량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시키지 않고,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손상 받지 않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기본권의 충돌시 그 해결방안으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다.⁷⁸⁾ 즉,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일인의 기본권만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희생시키지 않고 헌법의 통일성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부조화 현상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모든 기본권의 최적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권이 보장하는 가치질서⁷⁹⁾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⁸⁰⁾

이 규범조화적 해석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과잉금지의 방법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효력을 조화롭게 각각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등의 원칙에 의해 양 당사자의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돌하는 양쪽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서 두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두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⁸¹⁾ 즉, 충돌하는 양쪽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킨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기본권 모두를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하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기본권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제약의 정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쳐야 되는바,⁸²⁾ 적합성, 필요성, 비례성⁸³⁾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⁸⁴⁾

77) 윤명선, 상계논문, 78면; 허영, 상계서, 272면 참조.

78) 허영, 상계서, 273면 참조.

79) 기본권의 가치질서 이론은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기본권 규정을 다른 법영역인 사법분야 등에 미치게 하려는 견해이다. 이 이론에 대해 자세한 것은 성정엽, 전계 논문, 97면 이하 참조.

80) 윤명선, 전계논문(주 71), 79면 이하 참조.

81) 윤명선, 상계논문, 80면; 허영, 전계서, 273면 참조.

82) 허영, 상계서, 273면 이하 참조.

83) 이 원칙들에 대한 것은 성정엽, 전계논문, 101면 이하 참조.

둘째, 대안식 해결방법으로 이는 충돌하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고, 양쪽 기본권 모두가 다치지 않는 일종의 대안을 찾아내서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⁸⁵⁾

셋째, 최후수단의 억제방법으로 이는 대안식 해결방법에 의해서도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고 필요한 수단일지라도 모든 수단의 최후의 선까지 동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방법이다.⁸⁶⁾

라. 검토

먼저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으로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에 의한 해결하려는 것은 다양한 기본권 충돌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 일일이 입법이 정형화하여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과 기본권 충돌의 해결문제는 헌법해석의 문제인데 헌법해석은 입법자만이 아니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된다.⁸⁷⁾

다음으로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으로 법익(이익)형량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효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⁸⁸⁾과 충돌하는 기본권들을 법익(이익)형량의 결과 법익(이익)이 적은 기본권을 언제나 완전히 회생하는 것으로 보는 양자택일식의 방법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본권의 최대한의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된다.⁸⁹⁾

따라서 충돌하는 기본권들 간의 중요도를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아 각 기본권의 법익(이익)의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각 기본권의 법익(이익)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한과 보호를 가져오게 하며, 각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어느 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해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⁹⁰⁾ 즉, 그때그때의 구체적 사안에 맞게 충돌하는 양 법익(이익)을 형량을 하되

84) 이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재 1991.09.16. 89헌마165, 판례집 제3권, 529면; 현재 2007.10.25. 2005헌바96, 판례집 제19권 제2집, 467면; 현재 2008.10.30. 2006헌마1098, 판례집 제20권 제2집(상), 1089면 참조.

85) 윤명선, 전계논문(주 71), 80면; 허영, 전계서, 274면 참조.

86) 윤명선, 상계논문, 80면 이하; 허영, 상계서, 274면 이하 참조.

87) 정재황, 전계논문(주 61), 18면 참조.

88) 홍성방, 전계논문, 11면 참조.

89) 정재황, 전계논문(주 61), 22면 참조.

비례에 맞게 충돌하는 양 법익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¹⁾

그러나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 항상 이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하여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에 임산부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는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고, 법익(이익)형량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기본권을 서열화시켜서 중요한 기본권만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고, 기본권의 충돌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나 심각성 및 다른 구체수단의 존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법익(이익)형량에 의한 해석방법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⁹²⁾

그리고 충돌되는 기본권의 조절을 위해 행정청이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려 할 때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일차적으로 입법자에 의해 의한 입법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으로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에 의해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⁹³⁾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대안식 해결방법 또는 최후수단의 억제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와 함께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법익(이익)형량에 의한 해석방법과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

M.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의 해결방안

1. 서

언론의 자유 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미국에서 이른바 권리포기의 이론, 공공의 이익(이하에서 “공익”으로 줄임)의 이론, 공적 인물의 이론이 발전

90) 정재황, 상계논문, 33면 참조.

91) 김선택, 전계논문, 87면 참조.

92) 장영수, 전계논문, 124면 참조.

93) 정재황, 전계논문(주 61), 34면 참조.

하였는바.⁹⁴⁾ 본 논문에서 문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제49조 제10항 및 동법 제49조 제11항에 의한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 공개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규범조화적 해석의 하나인 권리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론, 공적 인물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이론들에 대해 각각 살펴본 후, 이 이론을 적용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제49조 제10항 및 동법 제49조 제11항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

2. 권리 포기의 이론

1984년 미국의 매샤츄세츠 연방 법원에 전기집을 간행하는 피고인 Walker 회사는 원고인 Corliss의 사진을 그의 전기집에 게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Walker 회사가 위반하자 이에 대해 원고인 Corliss의 사진을 그의 전기집에 게재한 것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Corliss 사건에서 미국의 매샤츄세츠 연방 법원은 “개인의 초상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자가 공적인물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정치인 · 작가 · 미술가 · 발명가는 공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바, 이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⁹⁵⁾ 이 판결에 의해 일정한 상황 하에서 공적인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볼 수 있거나 법률상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된다는 이론이 발전하였는바, 이 이론이 권리 포기의 이론이다.

3. 공익의 이론

공익이란 사회구성원이 어떤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아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⁹⁶⁾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1952년에 유타 미국 연방지역법원은 “보도적 가치, 교육 · 계몽적 가치, 오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공익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⁹⁷⁾

94) 성낙인, 전제서, 343면 참조.

95) Corliss v. E. W. Walker Co., 64 Fed. 280 (D. Mass. 1894).

96)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95면 참조.

97) Donahue v. Warner Bros. Pictures, 194 F. 2d 6 (10th Cir. 1952).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익이 된다는 공익의 이론⁹⁸⁾으로 발전하였다. 이 이론은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그 공개행위는 침해행위가 될 수 없거나 면책사유가 된다는 이론이다.⁹⁹⁾

4. 공적 인물의 이론

공적 인물의 이론이란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의 프라이버시권의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공적인물은 그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受忍)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¹⁰⁰⁾

한편 공적 인물 이론에서의 공적 인물 즉, 공인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공무원과 공적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⁰¹⁾ 여기서 공무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고용된 사람들 중 행정부 업무의 실행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이 있거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뜻하며, 그 예로 경찰관 등 법집행기관 종사자, 선출직 공무원, 사법부·입법부 공무원, 군 종사자 등의 공무원 중에서 정책결정의 권한이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¹⁰²⁾

그리고 공적 인물이란 어떤 개인이 그 자신의 재능·명성·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 때문에 공직인사가 된 자를 뜻하는바, 이 공적 인물은 다시 유명 정치인·운동선수·연예인·소설가·중앙 일간지의 칼럼리스트 등 사회공동체 내에서 일반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전면적 공적 인물과 어떤 공적 논쟁의 이슈해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논쟁에 뛰어든 사람을 뜻하는 제한적 공적 인물 및 공적 인물과 범인과 그의 가족 또는 유

98) 공익의 이론의 개념에 대한 것은 강현철·이주일,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 71면 참조.

99) 강현철·이주일, 상계서, 71면 참조.

100) 강현철·이주일, 상계서, 71면 이하 참조.

101)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언론과 법」,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 147면 참조.

102) 이광범, “미국 명예훼손법과 그 개혁론 -미국 명예훼손법 개혁론의 관점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5면;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56면 이하 참조.

명 연예인의 애인 등 등 특정한 타인 때문에 공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따라서 보도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공적 인물로 나누어진다.¹⁰³⁾ 이에 대해 1999년에 헌법재판소는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¹⁰⁴⁾

5. 검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이론들¹⁰⁵⁾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먼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출마한 선거후보자 측에서 선거후보자 자신은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 선거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비자발적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즉, 선거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그 자신의 의사나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공적 인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후보자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여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선거후보자의 부당한 재산의 축적 등 선거후보자의 공직에의 적합성과 청렴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실현시켜주게 된다. 따라서 권리 포기의 이론과 공적 인물의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선거후보자 측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정도를 일반인들과 같은 정도로 주장하거나 보장받으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들이 선거에 있어 선거후보자 측의 여러 정보를 알게 하여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공익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에게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이 위와 같은 사유¹⁰⁶⁾로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 측의 모든 프라이버시권이 없어지는 것은

103) 강현철 · 이주일, 전제서, 72면;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03면 참조.

104) 현재 1999.06.24. 97헌마265, 판례집 제11권 제1집, 777면 참조.

105) 본 논문의 IV-2-3-4번 참조.

106) 본 논문의 IV-5번 참조.

아니며,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의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있어 그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는 두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동법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 규정으로 인한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한계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서는 선거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대한 사항 중 최근 5년간의 것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신고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하고 있고, 선거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 규정으로 인한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한계 규정을 두고 있다.

V. 결 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부분을 공개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가에 관해서는 문제가 된 프라이버시권의 성격 및 내밀성과 공개를 요하는 공익적 필요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항과 관련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라도 공개가 인정될 수 있다.¹⁰⁷⁾

생각건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후보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신상공개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국민들이 당해 선거후보자의 공직에의 적합성과 공직의 남용 가능성 여부 및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등을 판단할 수 있게 알려주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후보자와 선거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자신의 사사(私事)의 공개를 동의한 자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

107) 김문현, “공무수행에 관한 보도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고시연구」, 제26권 제11호, 고시연구사, 1999, 139면 참조.

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에 의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 또는 상실했다고 헌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선거후보자는 공적 인물로서 자신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적으로 평가된다.¹⁰⁸⁾

이밖에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으로 인해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3호와 제4호에서는 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 소득 및 체납에 대한 것은 최근 5년간의 것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거나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사항 및 선거후보자의 직계존속의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하여 동 규정들로 인한 선거후보자 측의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의 한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사항은 선거후보자 및 선거후보자의 직계존속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강현철·이주일,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권형준, 「헌법」, 법원사, 2005.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 변재우,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91.
- 양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108) 김문현,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의 위헌 여부", 「고시연구」, 제26권 제8호, 고시연구사, 1999, 77면 이하 참조.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1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홍성방, 「헌법학 (중)」, 박영사, 2010.

강경근, “프라이버시권의 의의와 구성요소”, 「고시연구」, 통권 제306호, 고시연구사, 1999.
권영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고시연구」, 통권 제83호, 고시연구사, 1981.
권영호 · 김상명,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0.
권형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김문현, “알 권리와 그 한계”, 「인권과 정의」, 통권 제193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김문현,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의 위헌 여부”, 「고시연구」, 제26권 제8호, 고시연구사, 1999.
김문현, “공무수행에 관한 보도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고시연구」, 제26권 제11호, 고시연구사, 1999.
김선택,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제한의 특수문제로서 기본권충돌의 법리”, 「관례연구」, 제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박길자,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초등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초등교육학회, 2009.
서정우,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23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2.
서주실, “Warren ·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소, 1995.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성정엽, “기본권충돌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공법학연구」, 제1집, 영남공법학회, 1999.
안용교, “프라이버시 권리의 헌법론적 고찰 - 프라이버시 권리의 공법적 측면”, 「전국 대학교 학술지」, 제23집,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소, 1979.
안용교, “프라이버시권”, 「월간고시」, 통권 제76호, 법학사, 1980.

- 윤명선,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역사적 고찰-미국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20권 제1호, 경희대 법학연구소, 1985.
- 윤명선, “기본권 충돌시의 효력문제”, 「고시연구」, 통권 제265호, 고시연구사, 1996.
- 이광범, “미국 명예훼손법과 그 개혁론 -미국 명예훼손법 개혁론의 관점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성환,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도청 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88호, 한국법학원, 2005.
-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 이재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관훈저널」, 관훈클럽, 2003.
- 이희훈,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8.
-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고려법학」, 제3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0.
- 정재황,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소, 2002.
- 정재황,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 조규범,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 법학」, 제1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표명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헌법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2.
- 한상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의 보장”, 「고시연구」, 제7권 제12호, 고시연구사, 1980.
-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언론과 법」,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
- 황인호,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19집, 한

- 국토지공법학회, 2003.
- 홍성방,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안암법학」, 제9집, 안암법학회, 1999.
- A.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N.Y Atheneum, 1967.
- A. R. Miller, *The Assault on Priva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1.
- C. Fried, *Privacy*, 77 Yale Law Journal 475, 1968.
- W. M. Beaney, *The Right to Privacy and American Law. 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Duke Univ, 1966.

<http://data.adic.co.kr/lit/fulltext/S0003015/01.doc>.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Dic&y_number=6054.

〈Abstract〉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e Candidate's Public Offer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Lee, Hie Houn
Professor of Sunmoon University

It prescribes it to show property breakdown, obligatory military service breakdown, payment and default breakdown of income tax · property tax ·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in the past five years(this part includes it in direct descendant the upper and the lower classes of election candidate and an election candidate), crime career of punishment more than imprisonment, regular educational background to recognize by prim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law and higher education law in the number 2~6, clause 4, article 49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His direct descendant the upper and the lower classes with an election candidate are applicable to public figure in this rules. Therefore, they will have abandoned or lost in their privacy right by oneself. And the number 2~6, clause 4, article 49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ill

be said to be constitutionality. Because this rules let the nation know about conformity characteristics to public office of an election candidate, the abuse possibility of public office, integrity characteristics as public office, etc. so that the nation can do a right vote. In other words, this rules are able to realize public benefit. Also, the number 3~5, clause 4, article 49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ill be said to be constitutionality. Because this rules put the exceptions, that is, closed door rules of pertinent data so that this rules are not infringed contents of essence of the privacy right of an election candidate and his direct descendant the upper and the lower classes. Namely, this rules put a limit rule of the restriction.

Key Words : Public office election law, Right of privacy, Right to know, Collision of the basic right, Theory of an public figure